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동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옥내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옥내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공용급수설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또는 수도사용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내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단, 옥외 공동상에 설치되는 구경 40mm이상의 급수관 소유권은 제6조에 의한 급수공사의 승인과 제10조의 준공검사 규정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귀속됨을 승인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 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고 주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는 노후 수도미터기의 교체를 제외하고는 수용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⑦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⑧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 사용자로부터 구경확대요청이 있을 경우 종전의 급수시설에서 확대에 필요한 급수시설의 차액비용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시중 은행에 15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과 제17조에 의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신청 또는 그 밖에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15조(특수가압시설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설계도서 작성 및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제공자가 복구 또는 변상을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장 급 수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풍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이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사항이 있을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명의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소화용급수(공용급수)전에서 비상급수 공급 시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급수공급하며 사용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비상급수 사용 시 부담해야 할 사용요금과 산출기준·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침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나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의거 폐전을 신청할 경우 칠거되는 수도용 자재는 시의 소유로 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하고 서명징취 요구 불응할 때
  3. 제1항에 의하여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수 처분된 후 2개월 이내에 개전 신청이 없을 때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1·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여,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적용 대상 가구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 재조사하여 조정한다.

⑧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공급되는 수도사용량은 저수조인입 전에 설치한 계량기를 검침하여 통합고지 한다.

⑨ 제1항에 의거 매월 사용수량 조정 시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배수관에서 누수 발생되어 수도사용자가 누수내용을 인정하고, 분할납부를 신청 할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매월 부과되는 고지서에 포함시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요금 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중 요금 조정 등 잘못이 인정되어 가·감수량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수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고지서에 명기하여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는 이전 3

개월의 평균치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월 3개월의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임시급수)** ① 행사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 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10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41조제2항의 급수 중지 처분 해제 수수료

계량기구경 25밀리미터까지 5,000원

계량기구경 3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까지 20,000원

계량기구경 75밀리미터 이상 50,000원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와 옥내에서 발생되는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5. 관리부서 일반회개 지원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6.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법업소 지정 식품접객업소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과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겸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관리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판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설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9.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급수를 사용한 자

11. 제43조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어 2개월간 수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별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 업종별 요금표(제25조제1항 관련)

(단위:원)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요금	비고
가정용	1~20	420	
	21~30	567	
	31~50	788	
	51이상	1,029	
일반용	1~50	683	
	51~100	893	
	101~300	1,155	
	301~1,000	1,260	
대중탕용	1,001이상	1,365	
	1~300	819	
	310~500	893	
	501~1,000	1,050	
	1,001이상	1,260	

【별표2】

## 구경별 정액요금(제25조제1항 관련)

구경별	금액 (원)	비고
13mm	680	
20mm	1,830	
25mm	3,090	
32mm	6,180	
40mm	8,890	
50mm	16,520	
75mm	31,440	
100mm	34,860	
150mm	72,850	
200mm	106,250	
250mm	152,510	

【별표3】

## 업종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li> <li>2. 담배 · 연탄 · 양곡 · 문방구 · 지물포 · 철불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 인장업 · 행정서사업 · 수예점 · 만화가게</li> <li>3.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li> <li>4.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li> <li>5. 경로당 · 노인회관 ·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li> <li>6. 기숙사</li> <li>7.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 · 경비실 · 공동화장실 · 노인정 · 음수대 · 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 등에 대한 급수</li> </ul>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li> <li>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 전까지)</li> <li>3.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li> </ul>
대중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전용공업용	원수를 별도 설치된 배수관에 의하여 급수하는 것

【별표4】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4조 관련)

위반 내용	과 태 료		행정처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부담금 등의 정수를 면한자	공공 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1. 급수도용	○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명령 ○ 부정급수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자 아니한 급수공사	○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명령 ○ 부정 공사자,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설	○ 출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0원	○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과태료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처분
8. 업종위반			○ 업종 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 징수 ○ 업종 직권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세입은 하수도사용료·하수도원인자부담금·점용료·기타 특별회계·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④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개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

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락,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

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 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나. 하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점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3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내 오수발생량 산정은 각각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을

산정하여 합산 하여야 한다.

5. 오수발생량( $1\text{m}^3/\text{일}$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text{m}^3/\text{일}$ )에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 $\text{m}^3/\text{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및 납부(징수)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부과 및 납부(징수)시기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9조의 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태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sup>3</sup>/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준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준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되어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접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조손가족
-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0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가산금)**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불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제2항)

구 분 업종별	사 용 량 (m <sup>3</sup> /월)	m <sup>3</sup> 당사용료 (원)	비 고
가 정 용	1m <sup>3</sup> ~ 20m <sup>3</sup>	185	
	21m <sup>3</sup> ~ 30m <sup>3</sup>	200	
	31m <sup>3</sup> ~ 50m <sup>3</sup>	230	
	51m <sup>3</sup> 이상	250	
일 반 용	1m <sup>3</sup> ~ 50m <sup>3</sup>	215	
	51m <sup>3</sup> ~ 100m <sup>3</sup>	260	
	101m <sup>3</sup> 이상	280	
대중탕용	1m <sup>3</sup> ~ 300m <sup>3</sup>	242	
	301m <sup>3</sup> ~ 1,000m <sup>3</sup>	250	
	1,001m <sup>3</sup> 이상	295	
산업용	1m <sup>3</sup> 당	150	

※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료율을 적용함.

[별표 1-1]

## 공·공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용 또는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 가게, 소매점(구멍가게)등으로서 16m<sup>2</sup> 이하의 소규모 가게 및 이와 유사한 입소</li><li>· 공용급수전</li><li>· 신문보급소, 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li><li>· 경로당(노인회관), 양로시설, 둘이방</li><li>·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시설</li></ul>
일 반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li><li>· 공·사설소화전</li><li>·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li><li>· 지하도 무료화장실(상가겸용 제외)</li><li>· 소방용수</li><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영하는 사업 포함)</li><li>· 학교, 정당, 산림조합,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제외)</li><li>·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li><li>·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 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병원 및 대학 부속병원</li><li>· 병영</li><li>· 신문사, 방송국</li><li>· 급수탑에 의한 급수(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li><li>· 세종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li></ul>

업 종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접객업</li> <li>· 식품보존업</li> <li>· 공연장,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li> <li>· 숙박업(여인숙 제외)</li> <li>·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li> <li>· 병의원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제외), 가축병원</li> <li>·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m<sup>2</sup> 육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m<sup>2</sup>)이하의 안마시술소</li> <li>· 찜질방 등</li> <li>· 차량판매경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가스 충전소 포함, 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li> <li>· 예식장, 장의예식장(장의사 제외)</li> <li>· 학원(독서실 포함, 피아노개인지도 등 교습소 제외)</li> <li>· 전문사진 현상소(사진관 제외)</li> <li>·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m<sup>2</sup>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li> <li>·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li> </ul>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li> <li>· 이·미용업소(실면적 33m<sup>2</sup>이하 제외)</li> <li>·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li> <li>· 화훼, 식목업</li> <li>· 관광업(단순관광 알선업 제외)</li> <li>· 오피스텔, 리조텔 및 이와 유사한 업소</li> <li>· 도축장, 정육점</li> <li>· 양조업, 제방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페인트류 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가구류 제조업(자제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 제조 포함)</li> <li>· 염색업 및 섬유류 제조가공업, 식료품 제조가공업, 페혁제조 가공업소, 기타 월평균 200m<sup>2</sup>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li> <li>· 재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li> <li>·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li> <li>·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li> </ul>

업 종	구 분 내 용
일 반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li> <li>·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등 일시 사용에 한함.</li> <li>·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li> </ul>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목욕탕겸용 이발소 포함)</li> </ul>
산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li> </ul>

(주)

-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3) 공공하수도 사용로는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상수도, 지하수 등 모든 배출용 수를 구분하지 않고 아래 요율표에 의한다.

[별표 2]

공공하수도 접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접용	접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접용	접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접용	접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접용	접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 접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접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접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접용료는?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 3]

##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오수량 : m<sup>3</sup>/일)

구 분	최초 행정행 위시 오수발 생량(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	3  7  11	3  7  11	-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E)>10 전체부과
						12	15	12	(B)+(E)>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
						7	18	-	(A)+(B)+(E)<10 미부과
						11	22	11	(A)+(B)+(E)>10 초과량부과
						1	9	-	(E)>10 전체부과
법시행 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7  11	8  12  16	-	(A)+(B)<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
						6	18	-	(A)+(B)+(E)>10 초과량부과
						12	24	12	(B)>10 전체부과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
						6	22	-	3  6  12
						12	28	12	(B)<10 미부과
						3	16	-	3  6  12
						6	19	-	2  6  12
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10  (부과)	3  7  11	13  17  21	-	(B)<10 미부과	12	25	12	(B)<10 미부과
						2	19	-	2  6  12
						6	23	3	2  6  12
						12	29	12	2  6  12
						2	23	-	2  6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6	27	-	6  12
						12	33	12	12
						2	23	-	2  6  12
						6	27	-	6  12
						12	33	12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4]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left(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 (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5]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0조제2항)

구분 업종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가정용	20%	20%
일반용	20%	20%
대중탕용	20%	2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 $100\text{원} \times 20\% = 20\text{원}$ )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

## [별지]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8조제1항)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 유·면·동 번지( 통·반)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엔Hon,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sup>3</sup> /일	※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		검사일자 (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이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枚

수수료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129 호

##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그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

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금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 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은 별표1의 시설물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

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판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준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순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순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순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순교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3과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손괴행위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

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⑦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5조제1항 관련)

시설유형별	부과대상 기준	시설별 급수사용량 산출기준
주거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중 연면적 2,000m <sup>2</sup>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	
숙박시설	숙박시설연면적 600m <sup>2</sup>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등학교시설 제외)중 연면적 1,000m <sup>2</sup> 이상	
의료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급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업종 및 구경별 급수사 용량
환매·유통 및 영업시설	연면적 1,000m <sup>2</sup> 이상	
공장건축	연면적 1,500m <sup>2</sup> 이상	
기타시설	연면적 2,000m <sup>2</sup> 이상	

[별표 2]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 ○ 제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종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sup>3</sup>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sup>3</sup>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단위사업비(m <sup>3</sup> /일)	730,257원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수요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 급수량 × 첨두계수(1.35)

나. 1인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 제5조제1항 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 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다. 순자산/용수량 = 톤당 단위단가 = 596,259원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유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 제5조제1항 제3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 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기타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다. 순자산/용수량 = 톤당 단위단가 = 596,259원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3. 별표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외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아래의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을 부과한다.

구 경 별	금 액 (원)	비 고
13mm	150,000	
20mm	250,000	
25mm	500,000	
32mm	700,000	
40mm	1,000,000	
50mm	2,000,000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75mm	4,100,000	
100mm	7,000,000	
150mm	15,000,000	
200mm	26,000,000	
250mm	52,000,000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_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_2 = CA\sqrt{2gh} \text{ (오리피스공식)}$$

$$- Q_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_1$  = 초당 손실수량( $m^3/sec$ )       $Q_2$  = 시간당 손실수량 ( $m^3/hr$ )

$C$  = 유량계수 ( $C_a \times C_v$ )       $C_a$  = 수축계수 (0.666 적용)

$C_v$  = 유속계수 (0.97 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 $m^2$ ) =  $10,000a(cm^2)$        $g$  = 중력가속도( $9.8m/sec^2$ )

$H$  = 수두(m) =  $10p$        $p$  = 수압( $kg/cm^2$ )

(수두 10m는 수압  $1kg/cm^2$ 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작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작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면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 $m^3$ )       $A$  = 면적( $m^2$ )       $L$  =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